

의안번호	2211873
의 퇴 인	이병진 의원
회 답 일	2025.10.24.
추 계 번호	25E4120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— 제조업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제조업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함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,049억원, 2030년 4,113억원 등 2026~2030년 5년 간 총 1조 9,408억원(연평균 3,88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1조 4,497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4,910억원 감소 예상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제조업 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(안 제42조제1항제2호)	-3,049	-4,071	-4,081	-4,095	-4,113	-19,408	-3,882
－ 국세(74.7%)	-2,278	-3,041	-3,048	-3,059	-3,072	-14,497	-2,899
－ 지방소비세(25.3%)	-771	-1,030	-1,032	-1,036	-1,041	-4,910	-982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		비고
1	안 제42조(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) 제1항제2호	○ 제조업 사업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 인상			—
		<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: 제조업 사업자>			
		구분	현행	개정안	
		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	6/106	8/108	
		나.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	4/104	6/106	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2/102	4/104			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42조(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) 제1항제2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은 ‘공제대상금액 × 공제율’로 산출하고, 개정안의 세수효과는 공제율 변화를 반영한 의제매입세액 금액의 차이로 추계
 - 의제매입세액은 제조업 사업자가 신고한 공제대상금액을 기준으로 추정
 - 공제대상금액 = $\min(\text{①}, \text{②})$ ¹⁾
 - ①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농산물 등의 매입가액
 - ②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 × 한도율²⁾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1기(6개월)를 기준으로 하므로, 연간 공제 신고자료는 1기 및 2기 자료를 합산하여 활용
 - 공제대상금액의 최근 추세가 추계기간에도 이어지는 것으로 가정
 -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조정되더라도 공제대상금액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제
- 부가가치세 징수 시점을 고려해 세수효과를 조정하되, 매년 징수 기간별로 공제 규모가 동일한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의 부칙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추계

1) 「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」 [별지 제15호서식]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

2) 의제매입세액의 과도한 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, 업종별·규모별로 30~50%(2025년 12월 31일까지는 50~65%)의 한도율을 적용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공제대상금액 실적) 제조업 사업자가 신고한 연간 공제대상금액은 2022년 22.0조원에서 2024년 21.9조원으로 연평균 0.1% 감소 추세
-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공제대상금액은 연평균 9.2% 증가
 -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공제대상금액은 연평균 3.6% 증가
 - 그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공제대상금액은 연평균 2.6% 감소

[표 2]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신고 실적: 귀속 기준, 2022~2024년
(단위: 억원, %)

		2022	2023	2024	연평균 증감률
제조업	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	1,145	1,277	1,364	9.2
	나.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	85,536	86,872	91,734	3.6
	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132,871	129,209	125,981	-2.6
	합계	219,552	217,358	219,079	-0.1

주: 1. 공제대상금액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('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')의 신고내역을 집계한 것으로, 확정신고 및 결정·경정 전 금액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
2. 연간 금액은 1기 및 2기 금액을 합산하여 산출함
자료: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

- (세수효과 추계) 개정안에 따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인상 시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귀속 기준 4,0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- (공제대상금액) 최근(2022~2024년) 연평균 증감률 추세 반영

[표 3]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금액 추정: 귀속 기준, 2025~2030년
(단위: 억원)

	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제조업	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	1,489	1,625	1,774	1,937	2,114	2,308
	나.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	94,999	98,381	101,883	105,509	109,265	113,154
	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122,672	119,449	116,311	113,255	110,280	107,382

- (현행 공제액) 공제대상금액에 현행 공제율 반영 시 의제매입세액은 2026년 귀속 기준 6,218억원 수준으로 추정
 -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 개인사업자 공제율 6/106
 -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공제율 4/104
 - 그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공제율 2/102

[표 4]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추정(현행 공제율): 귀속 기준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
제조업	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	92	100	110	120	131
	나.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	3,784	3,919	4,058	4,203	4,352
	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2,342	2,281	2,221	2,162	2,106
	합계	6,218	6,300	6,388	6,485	6,588

- (개정안 공제액) 공제대상금액에 개정안 공제율 반영 시 의제매입세액은 2026년 귀속 기준 1조 283억원 수준으로 추정
 -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경영 개인사업자 공제율 8/108
 -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공제율 6/106
 - 그 외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공제율 4/104

[표 5]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추정(개정안 공제율): 귀속 기준, 2026~2030년

(단위: 억원)

		2026	2027	2028	2029	2030
제조업	가. 과자점업, 도정업, 제분업,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	120	131	143	157	171
	나. 가목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	5,569	5,767	5,972	6,185	6,405
	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사업자	4,594	4,473	4,356	4,242	4,130
	합계	10,283	10,372	10,472	10,583	10,706

- (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라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귀속 기준 4,06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6]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변화에 따른 세수효과 추정: 귀속 기준, 2026~2030년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
의제매입세액(현행 공제율 반영, A)	6,218	6,300	6,388	6,485	6,588
의제매입세액(개정안 공제율 반영, B)	10,283	10,372	10,472	10,583	10,706
연간 세수효과(B-A)	-4,065	-4,072	-4,083	-4,098	-4,118

- (세수효과) 개정안에 따라 제조업 사업자에 대하여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시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3,049억원, 2030년 4,113억원 등 2026~2030년 5년 간 총 1조 9,408억원(연평균 3,882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
- 부가가치세의 징수 시점을 고려해 연도별 세수효과를 조정함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년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 반영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총 1조 4,497억원, 지방소비세는 총 4,910억원 감소

[표 7] 제조업 사업자의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인상 시 세수효과: 징수 기준, 2026~2030년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전체 세수효과	-3,049	-4,071	-4,081	-4,095	-4,113	-19,408	-3,882
- 국세(74.7%)	-2,278	-3,041	-3,048	-3,059	-3,072	-14,497	-2,899
- 지방소비세(25.3%)	-771	-1,030	-1,032	-1,036	-1,041	-4,910	-982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